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해 양 심 층 수 의 개 발 및 관 리 에 관 한
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000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
처분 시 상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「해양
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062호, 2020. 2.
18. 공포, 2020. 8. 19. 시행)됨에 따라 현행법률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같
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시행예정 법률 조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개정법률에 따라 1일 과징금 부과기준 표의 연간 매출액(백만원) 구간 별
기준금액(원/일)을 상향 조정하여 과징금을 1억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
도록 함(별표 1 제3호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실시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3호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연간 매출액(백만원)	기준 금액 (원/일)	연간 매출액(백만원)	기준 금액 (원/일)
100 이하	60,000	5,040 초과 ~ 5,840 이하	620,000
100 초과 ~ 120 이하	100,000	5,840 초과 ~ 6,700 이하	660,000
120 초과 ~ 200 이하	140,000	6,700 초과 ~ 7,620 이하	700,000
200 초과 ~ 340 이하	180,000	7,620 초과 ~ 8,600 이하	740,000
340 초과 ~ 540 이하	220,000	8,600 초과 ~ 9,640 이하	780,000
540 초과 ~ 800 이하	260,000	9,640 초과 ~ 10,740 이하	820,000
800 초과 ~ 1,120 이하	300,000	10,740 초과 ~ 11,900 이하	860,000
1,120 초과 ~ 1,500 이하	340,000	11,900 초과 ~ 13,120 이하	900,000
1,500 초과 ~ 1,940 이하	380,000	13,120 초과 ~ 14,400 이하	940,000
1,940 초과 ~ 2,440 이하	420,000	14,400 초과 ~ 15,740 이하	980,000
2,440 초과 ~ 3,000 이하	460,000	15,740 초과 ~ 18,600 이하	1,020,000
3,000 초과 ~ 3,620 이하	500,000	18,600 초과 ~ 20,000 이하	1,060,000
3,620 초과 ~ 4,300 이하	540,000	20,000 초과	1,100,000
4,300 초과 ~ 5,040 이하	580,000		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개발과	
연 락 처	(044) 200-5249